1. 기금특별회계운용관 : 재무국장 2. 분임운용관 : 세정과장 3. 분임지출원 : 세외수입계장 ② (생략) 제10조 내지 제12조 (생략)	1. ─────────────── : 기획실장 2. ──────── : 기획담당관 3. ────── : 예산계장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내지 제12조 (현행과 같음)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3년 7월 6일

나.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다. 회부일자 : 93년 7월 7일

라. 상정일자 : 93년 7월 21일 (제2차 총무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한 일 택)

가. 제안이유

○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수여하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시 시의회 의결을 거처 확정토록 되어 있음
동조례는 시의회 개원전 제정 및 개정되어 시의회 의결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1. 4. 15일 부천시의회 개원으로 동조례 제2조 제1항(증서수여) 제4조(취소)의 "다만, 시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부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인원이 몇 명인지?	• 12명임
• 시민증서가 수여된 현황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바람.	•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의 유공부분은?	• 자매결연유공자와 상공회의소의 추천으로
•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유공부문은 수여받음으로써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는?	• 지방자치법 제12조 1항 및 제14조 규정에 명시된 규정의 혜택을 갖을 수 있음.

• 재산취득권을 일반시민과 같이 갖을 수 있는지? • 지방의회구성 이후에 시민증서가 수여된 사례가 있는지?	• 법도의 외국인 재산취득허가권을 받아야 함. • 없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
의 결 년 월 일	제21회 (93. 7. 23)

제안년월일 : 93. 7. 6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 개정이유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수여하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시 시의회 의견을 거처 확정토록 되어 있음.

동 조례는 시의회 개원전 제정 및 개정되어 시의회 의결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91. 4. 15 부천시 의회 개원으로 동조례 제2조 제1항(증서수여), 제4조(취소)의 "다만, 시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부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첨 부

1.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증서수여)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취소)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증서수여)①명예시민증서는 별표서식에 의하여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제2조(증서수여) ①---
다만, 시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부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권리의무) (생략)	제3조(권리의무) (현행과 같음)
제4조 (취소)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취소)--
다만, 시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부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삭제)
제5조(시행규칙) (생략)	제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3년 7월 6일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3년 7월 7일

라. 상정일자 : 93년 7월 21일(제2차 총무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조사과장　심 재 산)